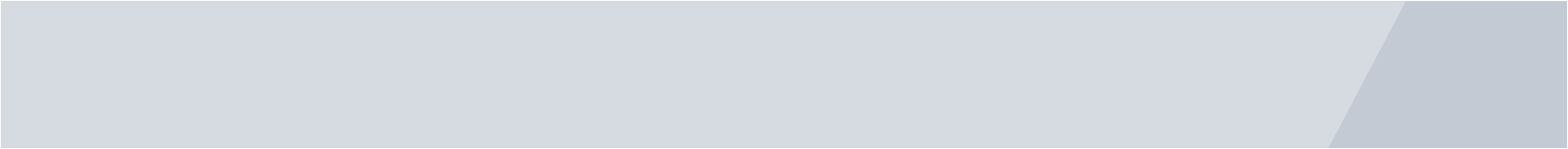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I. 채무자보호법의 제정 경위 및 조문 체계

채무자보호법*의 제정 경위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의 제정안 제출 및 입법절차 진행 경과

- ✓ 개인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강화
 -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2004년 법원 개인회생 제도 도입
 -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
 - 제20대 국회,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제21대 국회, 현행 대부업법에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 2022년 12월 14일, 정부는 대부업법과는 별도의 법률 제정 위한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 2023년 2월 21일 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 ✓ 2023년 3월 8일 ~ 3월 28일 제정안 입법예고
- ✓ 2023년 11월 30일 제정안 의결 (정부 제정안 및 국회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대안)
- ✓ 2024년 1월 16일 제정 (2024. 10. 17. 시행 예정)
- ✓ 2024년 7월 4일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기간 2024. 7. 5. ~ 8. 14.)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법의 목적,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연체 관리 제6조~제13조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연체이자제한 등)

제3장 제1절 추심시 준수사항 제14조~제24조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제3장 제2절 추심 위탁시 준수사항 제25조~제30조

-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추심위탁 시 준수할 사항

제4장 채무조정 제31조~제4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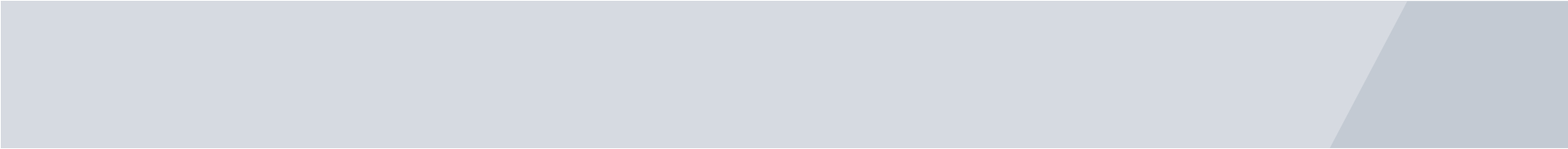
-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의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45조~제47조

-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
- 채권추심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 법정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벌칙 제48조~제5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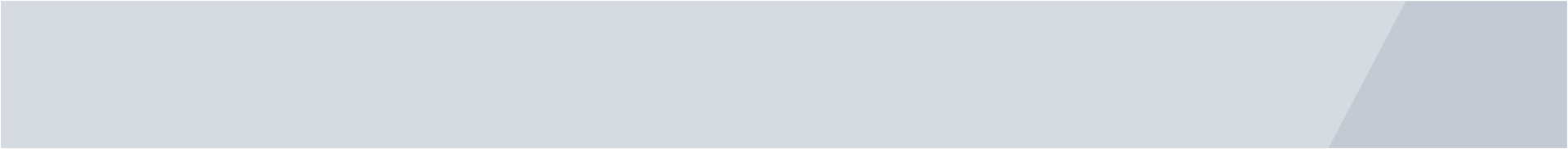
- 법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II. 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II. 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1. 총칙
2.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3. 채무자보호법 상의 각종 통지의무
4. 채권 양도 규제
5.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6.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7. 그 외 유의사항



1. 총칙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금전의 대부

나 .대위변제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양수

라. 그 밖에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가.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승인 등을 받아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정의 (제2조)

❖ “개인금융채무자”의 범위

✓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람)인 경우를 의미,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 포함

✓ 가계대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하여도 적용됨

✓ 대출의 주채무자가 법인이고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이 개인인 경우도 적용대상인지?

→ 법인 대출이라 하더라도 보증인 및 채무인이 개인이면 개인금융채무자에 포함됨

(사유) 법인의 개인보증인 또는 채무인수인의 경우에도, 법인(채무자) 파산 등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개인금융채무자와 달리 볼 이유 없음

✓ 물상보증인(제3자 담보제공자)는 ‘보증인’에 포함되지 않음

(사유) 물상보증인은 담보목적물의 한도에서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구분됨.

(민법에서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구분하고 있음)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그 밖에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담보채권, 고액채권의 경우 주요 조항 적용 배제

- ✓ **담보채권:** 채무조정 요청시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 조항(§6⑤),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조항(§9), 양도 제한 등 조항(§10①) 미적용
- ✓ **대출원금 5천만 원 이상인 개인금융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시 기한 미도래분에 대한 연체이자 제한 조항(§7) 미적용
- ✓ **대출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개인금융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에 관한 조항(§6),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조항(§9), 양도 제한 등 조항(§10~§13), 채무조정제도 조항(§31~§40) 미적용

적용범위 (제3조)

❖ “고액채권”의 범위

- ✓ 대출원금 5천만 원 이상: 기한의 이익 상실시 기한 미도래분에 대한 연체이자 제한 조항(§7) 미적용
- ✓ 대출원금 3천만 원 이상: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에 관한 조항(§6),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조항(§9), 양도 제한 등 조항(§10~§13), 채무조정제도 조항(§31~§40) 미적용

❖ 고액채권의 기준인 “원금”의 판단기준

- ✓ 채무자(개인) 기준이 아니라, 대출계약 건별(채권별) 기준으로 판단
- ✓ 일반대출의 경우: 약정원금(최초 대출약정 체결시 원금) 의미
- ✓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최초 대출약정 체결시 한도금액) 의미
- ✓ 담보채권이었으나 이후 경매, 매각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한 채권의 경우의 원금 판단기준?
 - ‘최초 대출 시점의 약정원금’ 기준으로 판단
- ✓ 신용카드 대금결제 연체의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 원금이 되는지?
 - 신용카드는 약정금액이 없고, 차주별로 한도 및 잔액을 관리하는 한도성 거래이므로, 차주별, 연체발생시점의 원금잔액 기준을 적용

적용범위 (제3조)

❖ “담보채권”의 범위

- ✓ 담보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
- ✓ 채무조정 요청시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 조항(\$6⑤),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조항(\$9), 양도 제한 등 조항(\$10①) 미적용

❖ “담보채권”의 판단기준

- ✓ 채권의 일부금액만 담보된 채권의 경우: **담보비율에 상관없이 예외대상에 해당**
 - 채무조정 요청시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 조항(\$6⑤), 양도 제한 등 조항(\$10①) 적용받지 않음
 - 단,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조항(\$9)의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금액만 담보되어 있다면 무담보인 부분(잔여 신용)은 예외대상에서 제외됨(즉,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무 적용)
- ✓ 담보목적물 경매, 매각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한 채권의 경우: 제6조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항 등 다시 적용

적용범위 (제3조) – 주요 QA

240819 QA 20번

❖ Q : 개인금융채권 원금(5천만원/3천만원) 기준은 담보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별 대출원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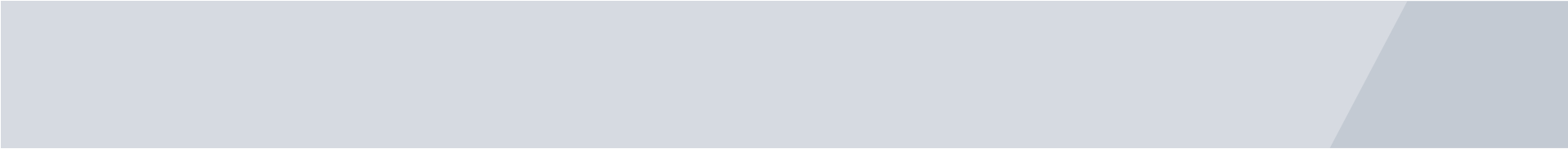
✓ A : 담보 설정 여부와 무관하며, 계좌별 대출원금 기준으로 판단. (令 제4조)

240819 QA 21번

❖ Q : 개인금융채권 원금(5천만원/3천만원) 기준은 대출계약 건별 최초 약정 체결시의 원금으로 되어있는데(Q&A `24.6월 23번) 중도에 약정을 감액하는 경우

- 1) 감액된 약정원금 기준으로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것인지,
- 2) 적용받는다면 감액 시점을 기준으로 동 규정에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 A : 1) 약정 시점 기준으로 판단
2) 감액 시점 기준으로 판단



2.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기한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제한(법 7조)]

- (현행) 기한이익 상실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3%p) 부과(약관)
- (法)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 동 부분을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
 - 연체 채권 관리·회수비용은 징수 가능
- (令) 연체이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체 채권 관리·회수비용을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정상이익은 보존
 -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 비용 징수 가능
 - 동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

※ [가상사례]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재)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개선) [1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 [90 x 약정이자] 부과

연체이자의 제한 (제7조)



제7조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제7조 제1항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의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 위 조항에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여, 이에 반하는 내용의 약관, 특약 등 사적 계약의 효력도 제한

ex. 약관에 연체시 잔여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되도록 규정된 경우 – 해당 조항 무효

연체이자의 제한 (제7조)

❖ 연체이자 제한의 적용대상

-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상실된 경우에만 적용대상

- ✓ 연체 이외의 사유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연체이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ex. (가)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개인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 약관에 위 사유가 당연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면, 위 사유 발생시 (통지 없이) 곧바로 잔여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발생

- ✓ 원금 5천만원 이상인 개인금융채권: 연체이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3②)

- ✓ 원금 3천만원 ~5천만원인 개인금융채권: 위 연체이자 제한은 적용됨 (§3③)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에 관한 조항(§6),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조항(§9), 양도 제한 등 조항(§10~§13), 채무조정제도 조항(§31~§40) 미적용

→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기존 약정내용(원채권금 융기관의 약정 내용 및 상환 스케줄)에 따라 이자를 부과해야 함

연체이자의 제한 (제7조) – 주요 QA

240819 QA 79번

- ❖ Q : 법 시행 전 이미 기한이익상실 처리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도 전부 소급하여 연체이자 계산을 재산출해야 하는지?
- ✓ A :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 약정에 적용(부칙 2조)

240819 QA 84번

- ❖ Q : 만기 이후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일시상환형 등)의 연체이자 산정은 법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아 남은 잔액에 대해 연체이자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한지?
- ✓ A : 만기 이후에는 전액 이자 부과가 가능함

연체이자의 제한 (제7조) – 주요 QA

240819 QA 86번

❖ Q : 법 제7조에 의거 상환기일이 미도래한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는 미 부과하더라도, 기한 이익상실 상태는 맞기에 신용정보집중회사 등에 보내는 연체 관련 정보는 동일하게 보내는 것인지?

✓ A : 동일하게 송부하면 됨

240819 QA 93번

❖ Q :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만 본 조가 적용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이나 연체 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다른 채권(법인, 고액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를 적용하면 되는지?(연체이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시점에 과거에 산출된 연체이자를 감면해줘야 하는 것인지?)

✓ A :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된 경우에만 제7조 적용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법 9조)]

- (法)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 그 내용을 양도계약서에 포함
 - 양도계약 체결시 이자채권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

- (令) 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채권을 세부적으로 규율

①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는 기관 :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채권

* 연체 1년 초과 → 상각처리(대손처리기준) → 손금산입(법인세법)

② 대손처리기준을 **미적용 기관*** : 연체 1년 초과 &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

* 대부업자, 정리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파산관재인 선임회사 등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9조)



제9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여야 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등은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의 면제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장래 이자채권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개인금융채권**
2.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 중 **최근 1년 이내 원금과 이자의 변제내역이 없는 채권**

가.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대부업자

나. 제2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다.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라. 기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제9조)

❖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 적용대상

✓ 면제대상인 '이자채권': 장래 발생할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의미

- (개인금융채권의 발생원인) 금전의 대부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부분을 의미
- 양수 이후 법적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비용: 해당 법적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를 필요
ex.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연12%) 등

✓ 면제 적용시점: 채권양도시점 이후부터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

- 개인금융채권 양도시 장래이자채권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채무조정 합의(이자율 조정 포함)를 통해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장래이자채권 면제 후 다시 채무조정 합의를 통해 이자를 부활시킬 수 없음 (법문언, 입법 취지와 맞지 않음)
- 개인금융채권 양도 후 환매 등의 사유로 다시 기존 금융회사가 채권자가 되었을 때, 다시 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부과할 수 없음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제9조) – 주요 QA

240819 QA 104번

- ❖ Q : 장래이자면제 채권 양수 후 연체해소금을 받아 연체가 해소되어 정상 채권이 된 경우에도 양수 후 발생하는 이자(연체이자포함)를 받을 수 없는지?
- ✓ A : 손금산입 채권에 해당한다면 여전히 받을 수 없음

240819 QA 108번

- ❖ Q : 장래 이자가 면제된 채권에 대해 청구소송을 통해 획득한 집행권원에 기재된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및 매각사 승계집행 시 기재된 이율에 따른 이자 청구 가능한지?
- ✓ A : 대여금청구소송에 따른 법정이율은 민법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해석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사법기관 판단이 필요

3. 채무자보호법상의 각종 통지의무

각종 통지의무

	구분(조항)	주요 내용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도달기준)	기한의이익 상실 예정 통지 (§6)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이익상실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주택 경매 예정 통지 (§8)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채권양도 예정 통지 (§1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 양도시 양도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그 외 통지 (발신기준*)	추심의 착수 통지 (§15)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추심위탁의 통지 (§25)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추심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통지
	채무조정 결정 통지 (§37)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에 통지

-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신청, 채권양도: 채무자 권리에 현격한 변동이 발생하므로 도달주의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달된 것으로 인정)
- 그 외: 발신주의 (발송시 도달 추정)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 (현행)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7영업일전 사전통지 필요(약관)
- (法)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채권회수조치 10영업일 전 채무조정요청권 사전통지, 통지 2회 반송 등의 경우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통지가능 가능
 - 사전통지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채무조정 여부 결정) 나기 전까지 채권회수조치 불가
- (令) 통지사항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회사 부담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통지방법·내용을 규정
 - ① (통지방법) 서면 원칙. 채무자와 합의시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 전자문서의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경유한 것으로 한정*하고, 도달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할 필요(발신주의 배제)**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방식감안, ** 보험약관 발급(수령여부 확인 의무)방식 감안
 - 통지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필요
 - 통지가 2회 이상 반송, 주소불명시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 2개 이상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통지 가능 가능
 - ② (통지내용) 공적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제6조 제1항~제4항)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요건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법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영 제6조(통지갈음방법) ①법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2.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등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제6조 제1항~제4항)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의무의 적용대상

-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만 적용

*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현재 시행령에 미규정

- ✓ 약관의 내용이 법률과 불일치하는 경우

→ 이 법률의 적용대상인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률을 우선 적용

ex. 약관에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7영업일 전까지 통지 → 10영업일로 연장되는 효과

-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1차 발송을 하였으나 반송되었을 때, 2차 발송도 반드시 동일한 통지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음

ex. 1차 발송을 서면으로 하여 반송되었을 때, 2차 발송은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

◆ 연체 이외의 사유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위 통지의무의 적용대상 아님

ex. (가)압류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개인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개시신청 등

→ 약관에 위 사유가 당연 기한의 이익상실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면, 위 사유 발생시 (통지 없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발생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제6조 제5항)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 ~ 6. 생략)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제6조 제5항)

-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 종료시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제한됨
- ✓ "채무조정 절차 종료시"는 '채무조정 결과가 확정된 시점'을 의미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여 조정서에 서명날인/기명날인한 때
 - 법제3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채무조정절차 종료된 때
 1.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 거절시
 2. 금융회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개인금융채무자가 미동의시
 3.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하지 않기로 결정시
 4.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여부를 미결정시
- 채무조정 성립 이후 합의가 해제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의무가 다시 적용되는지?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이후, (채무자의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인 경우에는 10 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주요 QA

240819 QA 32번

- ❖ Q : 법 시행 전 기한의 이익 상실 대상에 대하여 법 시행일(24.10.17)을 기준으로 연체이자 부과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지?
- ✓ A : 그렇지 않음. 법 시행 후 새로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에 적용

240819 QA 37번

- ❖ Q : 채무조정 합의로 발생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채무조정 합의 해제), 해제 예정일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을 처리해도 되는지?
- ✓ A : 해제 예정일 기준으로 처리 가능(동 내용을 채무조정안 합의서에 적시할 필요 있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주요 QA

240819 QA 47번

- ❖ Q : 현재 동법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일이 '도달일+10영업일 후' (A)로 규율되어 있는데, 실제 A 일자에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혹은 A 일자 이후에 처리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 (배경)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수기로 처리하는 은행들이 존재하는 바, A 일자에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운영리스크 측면에서 차이 존재
 - (의견) 법 문언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일에 실제로 상실 처리가 반드시 의무, 필수적인 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 A :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A일자 이후 처리 가능

240819 QA 58번

- ❖ Q :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지문 재 발송 시 기한의 이익 상실예정일을 재 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면,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임의적으로 예정일을 더 뒤로 산정하여 통지해도 되는지?
- ✓ A : 채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자율 선택 가능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주요 QA

240819 QA 83번

- ❖ Q : 만기도래로 연체 발생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가 필요하며, 통지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되는지?
- ✓ A : 만기도래 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불요
만기도래시에는 통지도달일과 무관하게 연체이자 부과 가능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제8조(주택경매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 대상 주택
2. 경매신청 예정일
3. 채무조정요건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영 제9조(주택경매 예정의 통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주택**
2.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중 그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6억원 이하인 주택**
 - 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
 - 나.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주택경매 예정의 통지 – 주요 QA

240819 QA 302번

- ❖ Q : 제1호 KB 시세일반평균가와 제2호 한국부동산원 층별, 호별 격차율 지수 중 낮은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가격의 산출시점이 대출취급 시기인지 아니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시기인지?
- ✓ A : 경매신청시가 원칙. 대출취급시점 주택가격이 낮다면 준용 가능

240819 QA 305번

- ❖ Q : '주택법' 상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을 표현하고 있는데,
Q1.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2항 1,2번으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지가 등의 시세를 활용할 수 있는지?
Q2. 활용할 수 없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지?
- ✓ A : Q1.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지가 등의 시세는 활용 불가능
Q2.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채권양도예정 통지 – 주요 QA

240819 QA 114번

- ❖ Q : 채권양도예정 통지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자가 변경되는 경우 재발송이 필요한지?
- ✓ A : 양도일자 변경 시 재 발송 필요

240819 QA 115번

- ❖ Q : 양도 예정통지를 진행하는 시점에 양수 예정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양수 예정인 미정으로 표시하고 추후 확정시 안내절차로 진행 가능한지?
- ✓ A : 입찰 참가자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확정시 추가 안내 필요

채권양도예정 통지 – 주요 QA

240819 QA 118번

- ❖ Q : 법 시행일 이전 매각한 채권의 환매 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예정의 통지 준수를 해야 하는지?
- ✓ A : 시행일 이전 매각채권 환매 시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양도예정의 통지 준수 필요

240819 QA 121번

- ❖ Q : 현재 양도 전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서면,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발송되는 양도예정 통지내용으로 같음이 가능한지?
- ✓ A : 같음이 불가능함

각종 통지의무

	구분(조항)	주요 내용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도달기준)	기한의이익 상실 예정 통지 (§6)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한의이익상실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주택 경매 예정 통지 (§8)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채권양도 예정 통지 (§1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 양도시 양도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
그 외 통지 (발신기준*)	추심의 착수 통지 (§15)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통지
	추심위탁의 통지 (§25)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추심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통지
	채무조정 결정 통지 (§37)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에 통지

-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신청, 채권양도: 채무자 권리에 현격한 변동이 발생하므로 도달주의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도달된 것으로 인정)
- 그 외: 발신주의 (발송시 도달 추정)

추심 관련 통지

제15조(추심의 착수 통지)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채권금융회사등이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직접 착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추심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추심 착수 예정일
3.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4. 연락·독촉 등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5.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6.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 제20조(추심의 착수 통지) ① 법 제15조에 따른 추심의 착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감독규정 미규정)

추심 관련 통지

제25조(추심 위탁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심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29조(추심 위탁의 통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감독규정 미규정)

② 법 제25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위탁 예정일

3. 수탁 예정인

4. 채무조정의 조건과 요청 절차·방법

5.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 예정 통지서 도달 후 5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을 경우 채권 추심을 예정대로 위탁한다는 사항

6.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7. 추심횟수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등 채무자보호법상 추심관련 채권자·채무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방법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감독규정 미규정)

채무조정 결정 통지 (제37조)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 ② 생략)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9조(채무조정의 처리 등) ①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금융회사등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와 합의된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수단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나. 전화

다.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 감독규정 미규정)

기타 통지- 주요 QA

240819 QA 141번

❖ Q : 최초 착수 시에만 1회 통지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추심/법적조치 원인을 해소하였다가 다시 연체하는 경우에는 착수 통지를 다시 해야 하는지?

✓ A : 다시 통지 해야 한다

240819 QA 188번

❖ Q : 추심위탁통지를 서면 외, LMS or 카카오톡 등으로 발송 가능한지?

✓ A : 전자문서는 발송 가능

240819 QA 192번

❖ Q :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시 통지방법이 서면 + 전자문서(당사자 합의 시)인데 전자 문서의 경우 기존 대출신청 시 또는 대출거래 중 전자문서 수신 동의(당사의 경우 스마트 안내 동의)한 경우도 합의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 A : 별도의 합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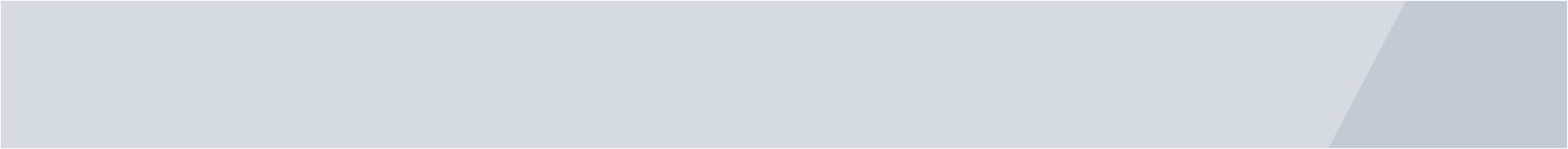
기타 통지- 주요 QA

240819 QA 334번

- ❖ Q : 추심착수예정통지를 하기 전에는 추심성 연체안내 문자가 아닌 단순 연체 상태 안내 수준의 문자 발송은 해도 되는지?
- ✓ A : 추심성격이 없는 단순안내의 경우 1일 1회 한하여 가능

240819 QA 374번

- ❖ Q : 채권추심 위탁의 통지 시, 통지방법에 대한 채무자와 사전합의가 필요한지?
- ✓ A : 사전합의 불요



4. 채권양도 관련 규제

양도 관련 규제

[양도 금지 채권(법 10조)]

□ (현행)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양도 금지(가이드)

*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사망채권, 채권존부 소송중인 채권,
채무관계 불명확한 채권(원인서류 부존재, 명의도용, 사기대출) 등

□ (法)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양도 금지

- ① 자체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채권
- ② 채권 상속 여부가 미확정, 채권 존부·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

□ (令)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을 추가 규율

① 반복매각 : 세 번 이상 양도

- 반복 매각이 채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횟수 미산정

*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 공공기관 매각시

②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 :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에도 미교부, 명의도용 등

양도의 제한 (제10조)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5.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감독규정 미규정)

양도의 제한 (제10조)

❖ 양도제한의 적용대상인 개인금융채권(법§10)

1.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사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협상 상대방이 갑자기 바뀌어 채무자의 신뢰보호 이익을 저해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사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 위 1.과 동일한 문제 발생

3.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사유) 새로운 채권자가 상속인이 미확정된 사실을 모르고 추심을 개시해 부당한 피해자 양산 우려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개인금융채권

(사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 소송 상대방이 갑자기 바뀌어 채무자의 신뢰보호 이익을 저해

양도의 제한 (제10조)

❖ 양도제한의 적용대상인 개인금융채권(법§10)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시행령 §11에 규정)

시행령 제11조(양도제한 채권)

1.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 가.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인에게 재양도하는 경우
 -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 다. 기타 반복된 채권양도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 감독규정 미규정)
2. 개인금융채무자가 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채권
3.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대출사기에 의한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양도의 제한 (제10조)

- 제1항 제3호의 “채권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의 구체적인 의미는?

→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민법상 단순승인, 한정승인 등을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채권양도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 개인금융채무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정적으로 채무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것

- 채권양도시 제11조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 양도시 채권양도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권양도 예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채무조정요건의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도 통지하여야 함

그런데 채무자가 위 통지를 받고 채권양도예정일 전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지?

→ 제1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양도가 제한됨, 채무조정 절차 종료시 다시 채권의 양도 가능

양도의 제한- 주요 QA

240819 QA 109번

- ❖ Q :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중인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서는 양도에 제한이 없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미인가 채권은 양도 제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 A : 채무자보호법에서 양도제한 채권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40819 QA 315번

- ❖ Q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횟수 산정은 법 시행 이후부터 양도된 횟수로 봐야 하는지 최초 대출시점 기준으로 양도된 횟수로 봐야 하는지?
- ✓ A :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양도부터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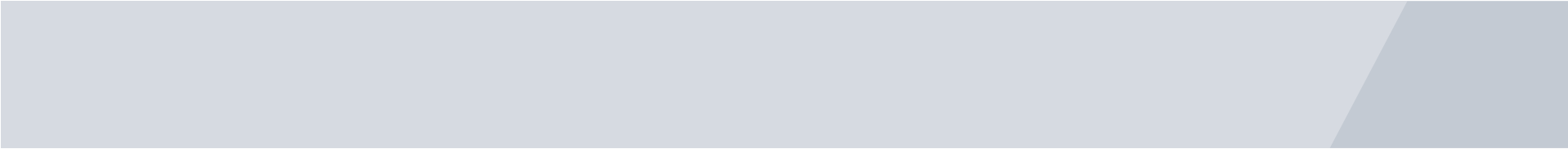
양도의 제한- 주요 QA

240819 QA 319번

- ❖ Q : 시행령 제11조 제1호 양도제한채권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채권의 범위가 기한이익 상실된 연체채권 상태에서 세 번 이상 양도될 경우 양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미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 전 채권도 양도 시 양도횟수에 포함되는지?

질의하는 사유는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인해(회사 M&A, 특정 대출상품에 대한 영업 중단 또는 영업양수도 등) 미 연체 상태의 채권을 채무자의 동의를 득한 후 타 금융기관으로 양도하는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 연체 상태의 채무자의 경우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채권자만 다른 여신금융기관으로 변경될 뿐 대출 조건 등은 변동없이 양수한 금융기관에서 승계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또한, 해당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 동의를 득한 후 양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된 상태의 채권을 세 번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제한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으로 사료된다.

- ✓ A : 기한 이익 상실된 채권도 세 번 이상 양도 시 양도 제한 채권에 해당 또한, 미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 전 채권도 양도 시 양도 횟수에 포함 (M&A 등을 통해 법 우회 가능성 감안하여 원안 유지 타당)



5.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추심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추심”의 범위

- ✓ 금융회사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로, 가압류 등 법적조치도 추심에 포함됨
- ✓ 다만, 추심의 착수 통지의무(법§15)의 경우 최초 추심 착수 시점에만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면 되고, 추심 착수 이후 후속 법적조치(가압류 등)마다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음

◆ 추심연락 횟수, 유형 제한 등의 입법취지

- ✓ 개인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호를 위하여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에 대한 제한장치를 강화하는 것
- ✓ 해외사례(미국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 Act)를 참조하였다고 설명

(금융위원회, 2022. 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

추심의 정의 (제2조)



[추심 금지 채권(법 14조)]

□ (현행) 추심 허용 시 채무자 보호를 저해하는 채권*은 추심 금지(가이드)

* 채무조정, 법원회생 신청, 채무자 사망,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 필요, 소멸시효 완성

□ (法) 추심을 허용할 경우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심을 금지

- ① 양도 금지채권(추심할 경우 채무자 권익보호에 중대한 영향)
- ② 채권자 불명확 : 채권자변동정보가 신정원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 (令) 성실상환의지가 있는 채권 등은 추심을 금지

- ① 성실상환의지 : 공·사 채무조정 확정 후 이행중인 채권
- ②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한 채권

추심연락 횟수 및 유형의 제한 (제16조 ~ 제18조)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추심연락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횟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을 금지

(令)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계산방법**을 규율

①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는 사항(횟수산정 시 제외)

- 법령 등에 의한 통지, 채무자 **문의·요청**에 따른 **답변·통지**(당일 통지)
- **독촉이 없는** 연체 채권 정보에 관한 **단순통지**(1일 1회 제외)

② 추심연락에는 해당하나, **횟수 산정 시 제외**하는 사항

- 추심이 채무자에게 미도달(방문의 경우 7일에 2회 제외)
- 채무자가 전화 중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

③ 동일한 채권에 대한 다수 추심자의 추심횟수는 합산

추심연락 횟수 및 유형의 제한 (제16조 ~ 제18조)



제17조(추심연락의 유예)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추심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경우
2.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난지원 대상이 된 경우, 수술/입원, 혼인/장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합의된 기간(1회 연장 가능)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 다만, 채무자의 연락 두절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거짓 주장을하여 추심연락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허용

* 7일 이상(3개월 이내) 추심연락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3회 이상(1년 이내) 주소를 변경한 경우, 거주지 변경이 7일 내 예정된 경우,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심연락 횟수 및 유형의 제한 (제16조 ~ 제18조)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는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연락수단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요청이 추심을 현저하게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

- * ① 대출 목적물 처분·3자 담보 제공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
②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확인
③ 신고된 주소에 미거주
④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

추심 시 준수사항- 주요 QA

240819 QA 134번

- ❖ Q :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가 상속인과 접촉하는 행위도 '추심'으로 보는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확인하는 행위도 '추심'인가?

✓ A : 추심이 아님

240819 QA 135번

- ❖ Q : 법 제14조 제3호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변동정보 집중의무 위반(또는 의무없음) 여부와 상관없이 양수인이 집중한 경우 추심이 가능한지?

✓ A : 채권자변동정보가 신청원에 제공된 것이므로 추심 가능

240819 QA 159번

- ❖ Q : 채무자에게 불이익 안내가 없을 경우, 결제약속(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을 하는 것이 단순통지에 해당되는지? 추심연락에 해당되는지?

✓ A : 추심연락에 해당한다

추심 시 준수사항- 주요 QA

☞ 240819 QA 326번

❖ Q : 시행령 제19조 제6호의 의미가,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체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심행위인 연락, 문자통지, 연체 우편통지 등이 불가하다는 것 인지?

✓ A : 불가함. 단, 추심성격이 없는 단순안내의 경우 1일 1회 한하여 가능

☞ 240819 QA 327번

❖ Q : 법 제19조(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전화 부재시에도 고지의무가 발생하는지?

Q1-1 “Q” 답변이 “해야 한다” 라면 기존 QA취합v5의 55번 질문 내용 중 홈페이지에 소속 연락처를 기재가 의무사항인지?

Q1-2 “Q1-1”이 의무 사항인 경우 시행령에는 사진을 올리라는 내용은 없으나 “방문 추심 시 사원증 제시하는 만큼, 비대면의 경우 사진 필요”라고 답변하셨는데 꼭 사진을 올려야 하는지? (시행령에는 사진 내용 없음)

✓ A : Q. 전화 부재시에도 고지(그 소속,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할 필요

Q1-1. 추심 전후 SMS 등을 통해 해당 추심자가 소속 직원임을 안내하거나, 홈페이지 조회 등의 방법으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Q1-2. 비대면의 경우 사진 필요 없음(기존QA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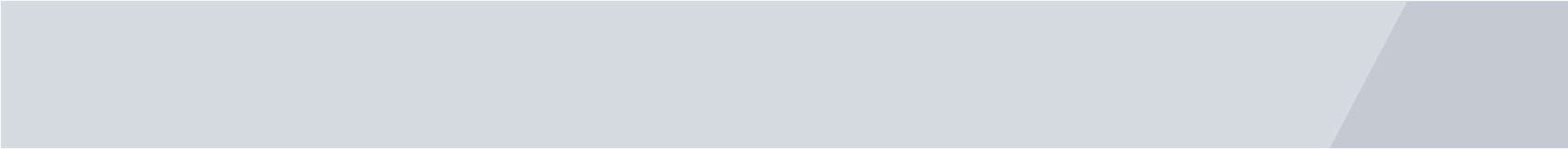
추심 시 준수사항- 주요 QA

240819 QA 346번

- ❖ Q : 단순 연체안내는 서면, 유선, 문자메시지 모두 가능한지? 그리고 단순연체 안내 내용에 입금기한, 입금계좌 표시가 가능한지?
- ✓ A : 가능 하다. 단, 입금기한, 입금계좌 표시 불가

240819 QA 364번

- ❖ Q : 추심연락의 유예기간 동안 채무자는 연체상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만큼 납기일을 미뤄주는 형태로 봐야 하는지?
만약 연체상태로 진행한다면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 등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통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밖에 단순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은 추심이 아니기에 관계 없는지?
- ✓ A : 연체상태임. 의무적 통지는 보내야함 (이는 추심으로 보지 않음)



6.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 입법취지

- ✓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조정 시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公的)제도 의존도가 크고 채권자의 자체적인 조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전제
- ✓ 채권자 자율 채무조정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채무자의 재기를 모색하고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빠른 신용 회복에 있다고 설명
- ✓ 유사한 제도로써 은행법 등에 규정된 금리인하요구권 등이 있다고 제시
(금융위, '2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제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참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의 제도화

[채무조정의 안내(법 32조)]

- ☐ (法) 금융회사는 자체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안내·공개할 의무
 -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개
 - CB사에 연체기록 공유 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 ☐ (令) 금융회사 홈페이지·게시판에 자체·공적 채무조정을 안내
 - 자체 채무조정 상세절차 : 채무조정 요청 방법조정 요청서·첨부서류 등
 - 여타 채무조정 :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법 35조)]

- ☐ (法) 채권 존부 소송 진행 중, 신복위 및 법원 채무조정 진행 시 요청 불가
- ☐ (令) 채무조정 합의해제(미이행 등)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 36조)]

- ☐ (法) 채무조정 서류 보완요청 불응, 채무조정 반복 요청
- ☐ (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무조정 요청 시 처리절차 (법 37조)]

- (法)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
- (令)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금융회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
 - ① 통지방법/내용 :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화/채무조정 내용
 - ② 조정서 작성 기한 : 채무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 ③ 채무조정 거절 시 법원 회생, 신복위 채무조정을 안내
 - ④ 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 신복위, 채권추심회사*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량 없이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경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법 40조)]

- (令) 금융회사 채무조정 합의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 규정
 - ①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 미이행
 - * 추심연락 유예 사유, 실업·무급휴직·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질병 진단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경과후 합의 해제 가능
 - ② 채무자가 사망·실종선고, 합의해제 요청, 공적 채무조정 확정
 - ③ 변제계획 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등 발견

채무조정 안내 (제32조)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방법**
2. 채권금융회사등의 채무조정 내용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서 및 첨부서류
4. 채무조정 요청의 접수 및 처리과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제도 관련 정보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 관련 정보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감독규정 미규정)

채무조정요청 (제35조)



제35조(채무조정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자는 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 가능
- 다만, 채무조정 합의 이후 해제된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권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채무조정 요청 불가

채무조정요청 (제35조)



제35조(채무조정요청)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37조(개인금융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① 법 제35조제2항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2.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감독규정 미규정)

채무조정거절 (제36조)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영 제38조(채무조정의 거절)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2.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감독규정 미규정)

채무조정 처리 (제37조)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39조(채무조정의 처리 등)

-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7조제3항의 10영업일에서 제외한다. (최대 10영업일까지 제한할 수 있다.)

채무조정 효력 (제38조)



제38조(채무조정의 효력)

-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조정의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개인금융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제안받은 날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효력은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개인금융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 채무자는 채무조정 결정통지(채무조정안 첨부) 또는 금융회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 결정 필요
- 금융회사 및 채무자가 **조정서에 서명날인/기명날인**함으로써 채무조정의 효력 발생
- 채무조정 합의 이후 채권양도시 **양수인에게도 채무조정의 효력 적용**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제39조)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 발생으로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 되면 제6조 제5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제한의 효력도 종료**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0조)



제40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가 가능한 사유(영 §41①)

1.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40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 (감독규정 §8)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유 (추심연락의 유예 사유)

- 채무자가 재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이 사고·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
- 개인금융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혼인·장례

2.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3.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 미이행시 채무조정 합의 해제 가능(영 §41②)

채무조정 – 주요 QA

240819 QA 236번

- ❖ Q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날 이후 3개월 이내의 채무자도 채권금융회사 등의 동의가 있으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 ✓ A :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안을 제안 가능

240819 QA 238번

- ❖ Q : 개인금융채무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조정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채무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지 여부
- ✓ A : 법 36조에 의한 채무조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해야함

240819 QA 241번

- ❖ Q : 자체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률상의 채무조정안과 별개로 운영토록 함으로서 채무조정안이 포함된 결정내용 통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A :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7조)

채무조정 – 주요 QA

240819 QA 242번

- ❖ Q :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던 신용대출 119 포함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모두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맞추어 프로세스 변경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기존에 신청부터 결과통지까지 기간 요건이 따로 없었고, 개인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요청서를 받거나 금융기관이 결과통지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절차들을 모두 준용해야 하는지?
- ✓ A : 자체 채무조정을 법률 내용에 맞춰 변경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

240819 QA 390번

- ❖ Q :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운영 시, 무서류 정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조정 요청서/조정서 등의 업무에 있어 본인인증을 통한 처리나 음성안내로 운영이 가능한지?
- ✓ A : 채무조정안 내용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
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서 작성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

240819 QA 391번

- ❖ Q : 대출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를 이미 제출 받고 있는데,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자에게 다시 제출 받아야 하는지?
- ✓ A : 그렇다. 채무조정 요청 시 동의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한다.

채무조정 – 주요 QA

240819 QA 396번

❖ Q : 1.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경우, 기존 대출채권의 기한이익 상실 처리 시점은 언제?
상실 예정 통지도 해야 하는지?

2. 채무조정 전 시점을 기산일로 연체이자 부과 가능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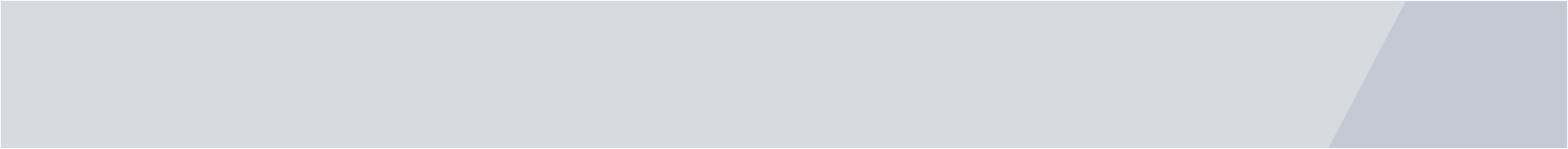
✓ A : 1. 채무조정 합의 전 기한이익 상실되지 않은 경우, 최초 대출 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일로 처리하고 상실 예정통지를 해야함 (동 내용을 채무조정안 합의서에 적시할 필요)
단, 채무조정 합의 전 기한이익 상실된 경우 해당 일로 처리하고 통지는 불요

2. 기한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

240819 QA 400번

❖ Q :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여 관리하는 중 합의 해제가 되는 경우, 원채
권사의 채무조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채무내용을 복원할 수 있는지?

✓ A : 그렇다. 원채권사의 채무조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채무내용 복원 가능.



7. 그 외 유의사항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제23조)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3조 제2항은 등록 만료/취소, 폐업으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채권을 추심하도록 규정
- 제23조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도록** 규정

담보조달비율 제한 (제24조)



제24조(담보조달비율)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代金)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하 “담보조달비율”이라 한다)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해서는 아니 된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비율(담보조달비율)을 **75%로 제한**
- 또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해당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부하려는 경우에 **그 채권의 담보조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도록 제한**

업무별 내부기준 마련의무 (제13조, 제20조, 제30조, 제34조)



제13조(채권양도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양도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채권추심내부기준) ① 채권추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채무조정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③ 채무조정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각종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 부과**
- **채무조정내부기준의 경우 마련, 개정 모두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
- **(법 제22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모두) 및 보호감시인(총자산 10억 이상)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감사합니다
